

	<h2>간호학과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3-4-2
		제정일자	2015.03.01.
		개정일자	2025.05.01.
		개정차수	10차
		소관부서	간호학과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간호학과의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대학의 제규정이 이 규정에 우선하며 간호학과 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.

제3조(준수의무) 간호학과 교수, 조교,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준수한다.

제2장 교육과정

제4조(교육과정 편성) ①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대학 학칙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교과목 이수 체계에 근거하여 교양필수, 교양선택, 전공기초, 전공필수, 전공선택 및 교직과정(교직이론, 교직소양, 교육실습) 등으로 구성한다.

② 교양 교과목은 학생이 졸업 시까지 총 25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.

③ 전공기초 교과목 중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은 8학점 이상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교육과정 개선) 교육과정개선은 간호학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연구·개발·자문·평가를 거쳐 심의·의결 후 간호학과교수회의에서 최종 심의·의결한다.

제3장 수업 및 성적평가

제6조(수업)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7조(성적평가) 학업성적 평가는 대학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. 다만, 교과목 특성에 따라 “Pass” 또는 “Non Pass”로 평가할 수 있다.

제4장 졸 업

제8조(졸업) ① 간호학과 졸업이수 학점은 최소 130학점이며 이중 교양교과목 25학점 이상, 전공기초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8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② 그 외 사항은 학칙 및 간호학과 졸업자격에 관한 학과지침에 따른다.<신설 2024.03.01.>

제5장 보건교사 양성과정

제9조(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)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2학년 승급대상자 중 교직이수를 신청한 자로 교육부 승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.

② 제1항의 이수예정자는 1학년 2학기까지의 평균성적 100분의 80, 면접점수 100분의 20,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반영하여 선정한다.

제10조(교직과정 이수자의 이수학점) 보건교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원자격검정령의 무시

형검정 최소기준에 의해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이외의 모든 사항은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에 준한다.

제6장 교원의 시수

제11조(교원시수) ① 간호학과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수로 한다. 다만, 보직교원의 시수는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간호학과 교원의 시수는 1시간당 1시수로 인정한다. 단, 전임교원의 임상실습교과목은 2시간 당 1시수로 인정한다.

③ 삭제 <2024.04.01.>

④ 임상실습교과목 시수는 15주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 <신설 2024.04.01.>

제7장 교원의 학생지도

제12조(학생지도) ① 간호학과 전임교원은 대학 학칙에 준하여 학생회 및 학생활동을 지도한다.

② 간호학과 전임교원은 평생지도 교수제로 교수-학생관계를 유지하여 대학생들의 적응을 도우며,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학습, 진로 및 취업등의 학생지도를 시행한다.

제8장 행정체계

제13조(학과장, 실습과장) ① 간호학과에는 학과장과 실습과장 각 1인을 둔다. 학과장은 학과를 대표하여 학과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실습과장은 실습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학과장은 학과의 인사, 예산편성 및 집행, 기타 중요 정책결정 시 간호학과교수회의를 통해 논의된 안을 관계 부처장과 협의하여 학과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발휘하도록 한다.

제9장 위원회

제14조(위원회 설치) 간호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획 및 심의, 의결하기 위해 간호학과 내에 간호학과운영위원회, 간호학과발전위원회, 간호학과교육과정위원회, 간호학과실습운영위원회, 간호학과산학협력운영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장은 학과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학과 교수가 될 수 있으며, 위원은 간호학과 교수, 타학과 교수 및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한다.

제16조(위원회 기능) ① 간호학과운영위원회: 학과 운영 및 성과관리, 학생 지도, 간호교육 품질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·의결

② 간호학과발전위원회: 학과발전을 위한 계획·운영·심의

③ 간호학과교육과정위원회: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학습성취에 관한 제반사항의 편성·운영·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의결

④ 간호학과실습운영위원회: 교내실습, 임상실습,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·의결과 단계별 핵심간호수평, 평가체계에 대한 제반사항 심의·의결

⑤ 간호학과산학협력운영위원회: 현장실습, 산학협력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·의결

제17조(회의 및 의결) 각 위원회의 지침에 준한다.

제18조(간호학과교수회의) 간호학과교수회의는 학과 전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학과운영전반

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과 간호학과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·의결한다.

제10장 조 교

제19조(조교의 자격 및 배치) ① 조교는 대학이 정하는 자격에 준한다.

② 효율적인 학과운영지원을 위해 편제정원 160명당 1명 이상의 조교를 두며, 교무행정, 학생지원, 교내실습과 현장실습 담당으로 배치한다.

제20조(조교의 업무) 조교는 업무분장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